

■ 법률 칼럼

학생 신분 변경 시 유의사항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신분(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단 수속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 수속을 하는 경우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작년부터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지문 날인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처리 속도가 더 늦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서류 요청이 빈발하고 있고 케이스 거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시에 주의할 사항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에 대한 준비

잘 알려진 대로 이민국은 신청인에게 1년 정도의 학비와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은행 잔고에 관한 서류를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구좌 증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통장으로 대신 공부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부모님이 공부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진술서 등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2. 90일 규정

미국 입국한 이후에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은 90일 규정입니다. 미국 방문 등 특정 신분으로 입국한 후에 신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하면 입국 시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분들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욱 강화된 입국에 대한 미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분 변경을 하려는 어떤 조치만 했어도 이민관 재량에 따라 케이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0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혹은 시라도 I-20를 발급받는다든지 하는 학교로 진학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 케이스가 거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공부를 하려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의사 전달

이민관에게 왜 그 학교에서 그 과정을 들고자 하는지, 공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편지에 잘 설명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이민국 경향이 신분 유지를 위해서 공부의 의지 없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케이스를 강력하게 색출해 내겠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학교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까지 신분 유지 규정(브리지)

지난 몇 년 간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분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30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학생 신분으로 변경 이전의 신분이 학교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의 체류 신분이 2021년 7월 1일에 끝이 난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학교가 적어도 7월 31일이 이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애초에 신분을 신청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 분들이 크게 낭패를 보셨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문 신분으로 6개월을 기준 신분으로 연장하거나 변경하여 이 30일 갱을 유지해 주려는 브리지가 지난 몇 년 간 학생 신분 변경에 있어서 필수화되었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 시 기준 신분을 6개월 간 방문비자로 연장 또는 변경해 주는 것을 같이 신청하는데 이것을 브리지라고 부릅니다. 체류 신분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 신분 변경을 하는 분들은 꼭 이 브리지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속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많이 남은 경우도 브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설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주의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월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설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전문의 칼럼

고지혈증과 스타틴 약물치료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큰 위험 인자 중의 하나가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에서 LDL-C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선형관계가 증명되어 있고, LDL-C의 수치를 내리는 것이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는 올라간 LDL-C 수치를 내리는 것만이 임상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중성지방을 낮추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을 올리는 것은 연관이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효과가 좋은 약이 스타틴(Statin)입니다. 성분에 따라 일곱 가지 종류의 약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아토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실바스타틴 등이 많이 사용되어 시니어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타틴 약물로 LDL-C를 낮추는 치료는 사실상 모든 정도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틴 치료는 심혈관계 위험을 20~30% 낮추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이 전혀 없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인자가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스타틴을 먹으라고 권하는 게 합리적일 정도로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와 약물은 정도는 다르지만 비용 문제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는 항상 약물을 사용함으로써의 득과 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결정해야 합니다.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밖에 두통이나 소화기 부작용, 간 수치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적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스타틴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복용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몇 달 안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경우 스타틴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약을 먹든 안 먹든 우선 체중 감량, 유산소 운동, 포화지방 섭취의 감소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 스타틴의 부작용

모든 약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다른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에 비해서 부작용의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만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 부작용의 빈도는 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실상 그리 높지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FO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 714.872.9377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